

●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2766)

2025.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6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김영옥 의원(찬성 20명)

나. 제출일 : 2025년 5월 26일

다. 회부일 : 2025년 5월 26일

2. 제안이유

가. 종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정비함.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호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II.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법적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 동 조례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의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을 「노인일자리법」 제9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 ----- -----.

- 2024년 전국기준 노인비율은 20.0%로 초고령사회 진입하였으며, 서울시는 2025년 5월 현재 노인인구 1,85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9.9%에 해당되며, 2025년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임.

〈인구 추계〉

구 분		2024년	2025년 5월	2026년	2027년	2028년
전국	총인구(명)	51,217,221	51,169,148	51,609,121	51,534,551	51,459,877
	어르신인구(명)	10,256,782	10,504,871	11,125,016	11,597,067	12,125,349
	구성비(%)	20.0	20.5	21.6	22.5	23.6
서울시	총인구(명)	9,331,828	9,328,042	9,286,528	9,235,940	9,187,423
	어르신인구(명)	1,813,648	1,852,982	1,941,535	2,005,140	2,080,404
	구성비(%)	19.4	19.9	20.9	21.7	22.6

※ 출처 : 통계청, 2025. 6.

- 2023년 10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인 「노인복지법」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제23조의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우선구매(제23조의3)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 종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관련 조항들이 「노인일자리법」 제9조로 이관되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인일자리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제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23년 10월 신규 제정된 「노인일자리법」 제9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규정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적 근거를 조례 상 근거 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 의견 : 원안가결

-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제2조(정의)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 개정안은 종전에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일자리법」로 이관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 1조 목적에는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